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5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 한지아·고동진·김형동

최보윤 • 박정하 • 임이자

조경태 · 서일준 · 박성훈

김소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, 제5조, 제16조및 제36조).

법률 제 호

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제7항 중 "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"을 "책임 판매관리자,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맞 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은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"를 "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"로 한다.

1의3.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 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 품

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16조제1항제1호

·제1호의2 또는 제4호"를 "제16조제1항제1호·제1호의2·제1호의3 또는 제4호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혅 행 개 정 제3조의2(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제3조의2(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신고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 어야 하며, 맞춤형화장품의 혼 합・소분 등 품질・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맞춤 형화장품조제관리사"라 한다) 를 두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 ----. 다만, 제2조제3 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 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 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 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 원을 둘 수 있다. 제5조(영업자의 의무 등) ① ~ ⑥ 제5조(영업자의 의무 등) ① ~ ⑥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⑦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 ⑦ 책임판매관리자, 맞춤형화장 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 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 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항 단서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

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은

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.

#### ⑧ ~ ⑩ (생 략)

- 제16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 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 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.
  - 1. · 1의2. (생략)
  - 1의3.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 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 품

#### 2. ~ 4. (생략)

② 누구든지(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 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 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 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 한다)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 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제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6조(벌칙) ① ----

8 ~ 10 (현행과 같음) 제16조(판매 등의 금지) ①
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
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
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
따른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
판매한 맞춤형화장품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맞춤형화장품조제
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
서에 따른 종업원을 통하여 판
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1의3. (생 략) 1의4.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
- 2. ~ 3. (생 략)
- 4. <u>제16조제1항제1호·제1호의2</u> <u>또는 제4호</u>를 위반한 자
- ② (생략)

\_\_\_\_\_

-----.

- 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  - 2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6조제1항제1호 · 제1호의2
  ·제1호의3 또는 제4호---② (현행과 같음)